

## [2022년도 급여이용계약 사항]

### 제8조 (이용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코자 하는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로서 서비스이용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3. **모집방법**
  -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 2)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온·오프라인(인터넷/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사이버 홍보(SNS), 전단지, 지인소개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발굴, 모집한다.

###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본인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③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 ④ 신분증 (필요시)
    - ⑤ 입소이용의뢰서 (필요한 수급자에 한함)
    - ⑥ 서비스이용계약서
    - ⑦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 이용자에 한함)
  -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2.01.01. 기준)

| 등 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 5 등급      | 인지지원    |
|-------|-----------|-----------|-----------|-----------|-----------|---------|
| 월 한도액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22.01.01. 기준)

| 급 여 분      | 분 류 호 | 분 류                      | 금액(원)  |
|------------|-------|--------------------------|--------|
| 방 문<br>요 양 | 가-1   | 30분 이상                   | 14,750 |
|            | 가-2   | 60분 이상                   | 22,640 |
|            | 가-3   | 90분 이상                   | 30,370 |
|            | 가-4   | 120분 이상                  | 38,340 |
|            | 가-5   | 150분 이상                  | 43,570 |
|            | 가-6   | 180분 이상                  | 48,170 |
|            | 가-7   | 210분 이상<br>(1,2등급 이용가능)  | 52,400 |
|            | 가-8   | 240분 이상<br>(1,2등급 이용가능)  | 56,300 |
| 방 문<br>목 욕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5,450 |
|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8,030 |
|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 |
| 방 문<br>간 호 | 다-1   | 30분 미만                   | 36,530 |
|            | 다-2   | 30분 이상 ~ 60 분 미만         | 45,810 |
|            | 다-3   | 60분 이상                   | 55,120 |

### 2-1)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 재가급여 |
|-----------------------------------------------------|------|
| 일반                                                  | 15%  |
| 기초수급권자                                              |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                                           | 6%   |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9%   |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

### 3)종일 방문요양급여(치매가족휴가제)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83,53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미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 ③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6,59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 ⑤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⑥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구분                               | 금액(원)   |
|----------------------------------|---------|
|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 | 83,530원 |

### 4.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 할(될) 수 있다.

-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 6)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 및 계약사항이외의 과도한 요구사항을 요구할 경우

##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서비스 이용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1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및 본인부담금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기관, 대상자(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 3자간에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
-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5)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한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 제1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지 1-1: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 2)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 등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지 1-2:방문목욕 서비스의 내용)

- 3) **방문간호** :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전문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질병관리, 배설 관리, 인지 훈련, 영양 관리, 신체 훈련, 질환에 관련 된 교육 및 상담 활동 등 포괄적인 영역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지 1-3: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

- 4) **복지용구** :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장구 및 복지용구를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 제품을 선택하여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 부터 180분 이상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30분 이상부터 90분 이상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다.
- 5등급 수급자중에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 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급여와 재가형 방문요양은 같은날 함께 이용이 불가하다.

### 4.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3]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야간보호의 급여를 이용 할 경우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 중 한 가지만 인정한다.

### 5.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4]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 (가정에서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8회까지만 이용가능 하다.

### 6. 가족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수급자의 가족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월 근무 시간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는 1일 60분 월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 중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에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는 1일당 90분이상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 할 수 있다.

#### 8.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 한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 : 급여비용의 50%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5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저에 따라 공휴일 : 50% 가산

#### 9. 기타 비용 부담 등

-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1-1]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 구 분         |  | 세부내용                                                           |  | 구 분         |  | 세부내용                                                               |  |
|-------------|--|----------------------------------------------------------------|--|-------------|--|--------------------------------------------------------------------|--|
| 신체활동 지원     |  |                                                                |  | 인지활동 지원     |  |                                                                    |  |
| 세면도움        |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 인지자극 활동     |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 물품 정리                     |  |
| 구강관리        |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일상생활 함께하기   |  |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
| 식사도움        |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 정서 지원       |  |                                                                    |  |
| 몸단장         |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말벗, 격려      |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
| 옷갈아 입히기     |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겹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                                                                    |  |
| 머리 감기기      |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외출 시 동행     |  |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
| 목욕도움        |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 일상 업무 대행    |  |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  |
| 화장실 이용하기    |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식사준비        |  |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  |
| 이동도움        |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 청소 및 주변정돈   |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옷장·서랍장 등 정리 |  |
| 체위변경        |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  |                                                                    |  |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  | 세탁          |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

[별지 1-2]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 목 욕 전 | 욕조준비, 목욕준비              |
| 목 욕 중 | 몸 씻기                    |
| 목 욕 후 | 관리(물기제거, 옷 입(히)기), 주변정리 |

[별지 1-3]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기본간호  | 혈압, 맥박, 체온 측정                                                             |
| 질병관리  |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                                                    |
| 영양관리  |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                                                         |
| 배설관리  | 소변 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                                              |
| 신체훈련  |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                                                            |
| 인지훈련  |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
| 교육.상담 |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                                                       |
| 건강관리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